

의안번호	제 234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10월 일 (제304회)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정 헌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1년 10월 11일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 헌 의원 대표발의)

발의연월일 : 2011년 10월 11일

발 의 자 : 정 헌 · 김봉희 · 김종필 · 김희수 ·
박문희 · 윤성옥 · 황규철 의원(7명)

의안 번호	234
----------	-----

1. 제안 이유

-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사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문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현실에 맞게 일부조문을 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(안 제2조)
- 나.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(안 제3조, 안 제15조, 안 제16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5. 예산조치 : 83,000천원(도비)

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와 제2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각각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라 함은”을 “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"기업애로지원 음부즈만"이란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고충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도지사는 기업이나 기업인이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홍보와 교육을 통해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협의회”로 한다.

제16조제3항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기업지원정보 시스템 『e-기업사랑센터』 운영
4. 기업애로 통합 온라인시스템 『기업SOS』 운영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기업”이라 함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내에 본사나 사업장 등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.</p> <p>2. “기업인”이라 함은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.</p> <p>3. "기업지원 관련단체"라 함은 기업사랑이나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.</p> <p>4. "기업애로지원 ombudsman"이라 함은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고충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u>이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2. -----<u>이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3. -----<u>란</u> ----- -----.</p> <p>4. "기업애로지원 ombudsman"이 <u>란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</u> <u>항을 파악하고 고충민원을</u> <u>조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</u> <u>사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책무) 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제3조(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 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도지사는 기업이나 기업인이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홍보와 교육을 통해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</p>
<p>제15조(협의회 구성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15조(협의회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협의회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·운영) ① ~ ② (생략)</p>	<p>제16조(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·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	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기업지원정보 시스템 「e-기업사랑센터」 운영</u></p> <p><u>4. 기업애로 통합 온라인시스템 「기업SOS」 운영</u>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